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가단528929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변론 종결2017. 5. 31.

판결 선고2017. 7. 5.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2,998,888원과 그 중 22,998,864원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6. 12.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6. 4.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6. 4. 5. 접수 제64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6. 5. 24. 각 체결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6. 5. 25. ① 접수 제10359호로 경료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② 접수 제1036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③ 접수 제10361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계약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0. 2. 17.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7,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0. 2. 17.부터 2011. 2. 1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후 신용보증조건을 매년 변경, 연장하여 2016년 2월에는 신용보증기간 2017. 2. 10.까지, 신용보증원금 22,950,000원으로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10. 2. 10.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 6. 29.경부터 대출금채무가 연체되어 2016. 7. 4.경 신용보증사고 통지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6. 10. 25. 기업은행에게 23,087,13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날 피고 A으로부터 88,27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액이 22,998,864원이 되었고, 위 회수금에 관한 확정손해금이 24원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6. 10. 25.부터 연 10%이다.

나.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부동산 처분

피고 A은 2016. 4. 1. 피고 B에게 별지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8,16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서 같은

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2016. 4. 5. 피고 B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6. 4. 5. 접수 제64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의 피고 C에 대한 부동산 처분

1) 피고 A은 2016. 5. 20.경 피고 C에게 별지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2-가, 2-나, 2-다, 2-라, 2-마 토지'로 특정하되, 2-마 토지는 피고 A 소유의 1/2 지분만 해당함)들을 일괄하여 매매대금 7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시 계약금 15,000,000원을 수령하고, 2016. 5. 24. 중도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 A은 이 사건 2-가, 2-나, 2-다, 2-라 각 토지들에 관하여 2014. 12.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매매계약 당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 C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을 2017. 12. 30.로 정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되, 중도금이 지급된 다음날인 2016. 5. 25. 피고 C에게 이 사건 2-가, 2-나, 2-다, 2-라 토지에 관하여 2016. 5.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2-마 토지의 피고 A 소유 지분에 관하여는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위와 동일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피고 A의 재산상태

피고 A은 이 사건 1, 2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합계 88,160,000원 상당인 별지1, 2목록 각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89,000,000원, 신용대출채무 7,200,000원, 카드론 채무 6,016,000원, 현대캐피탈에 대한 신용대출채무 27,460,000원, 오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신용대출채무 7,000,000원,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23,000,000원 가량(원고가 대위변제하기 전 채무)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2, 3호증, 을다 제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이 법원의

무안군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22,998,888원(= 대위변제금 23,087,134원 - 회수금 88,270원 + 확정손해금 24원)과 그 중 잔존 대위변제원금 22,998,86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0. 25.부터 피고 A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6. 12. 31.까지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권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장래채권의 경우에도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 2 매매계약 체결일(2016. 4. 1. 및 2016. 5. 20.) 이후인 2016. 10. 25. 원고가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2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0. 2. 17.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었고, 이후 신용보증조건을 매년 변경, 연장하여 옴으로써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1, 2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3개월 후인 2016. 7. 4. 피고 A의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보증사고 통지가 이루어지는 등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원고가 2016. 10. 25. 기업은행에 피고 A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가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2016. 4. 1. 이 사건 1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에게 별지1목록 기재 토지를 매도하고서 계약 당일 그 매매대금 18,1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소비한 사실, 이어 피고 A이 2016. 5. 20.경 자신에게 남아 있던 유일한 재산인 별지2목록 기재 각 토지를 피고 C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1매매계약을 통하여 별지1목록 기재 토지를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뒤 이를 즉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었고, 이 사건 2매매계약을 통하여 자신에게 남은 나머지 부동산들을 모두 처분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피고 A의 이 사건 1, 2매매계약을 통한 부동산 처분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다. 피고 B, C의 선의 항변

1) 피고 B, C의 주장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매도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위 피고들의 각자 사정에 따라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정상거래였다고 항변한다.

2) 관련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3)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나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는 전남 무안군 D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12세경 상경하였고, 피고 B의 어머니 E는 전남 무안군 F 답 3002m²(이하 'F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B의 아버지 G와 함께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피고 B는 아버지 G로부터 F 토지 바로 위에 위치한 이 사건 1토지(H)를 피고 A으로부터 매입하는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1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1토지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로서 객관적인 투자가치가 높지 않아 보이고, 제1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은 이 사건 1토지의 공시지가 19,392,920원보다 약간 낮은 18,160,000원으로 정하여져 매매대금이 현저히 저렴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A과 피고 B가 I리라는 같은 고향 출신이기는 하나 각자 상경한 지가 오래되었고, 친인척 관계도 아니어서 피고 B로서는 피고 A의 채권·채무 상황이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피고 B로서는 부모님이 F 토지를 오래전부터 소유하며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으므로, 바로 인접한 이 사건 1토지를 매입할 동기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1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 B에 대한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다.

4)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다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는 전남 무안군 D에서 자라다가 상경하였으나, 피고 C의 고향집인 전남 무안군 J 토지 및 지상 주택(피고 C의 형 K 소유)에 인접하여 진입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사건 2-가 토지의 매입을 오랜 기간 원하여 오던 중 2016년 구정 무렵 피고 A이 이 사건 2-가 토지 등을 매각할 의사가 있음을 K으로부터 전해 듣고서 위 토지 매매에

관하여 가격 및 조건을 협의하기 시작한 점, ② 또한 피고 C의 형 K은 L 답 2,425㎡ 및 M 답 47㎡의 1/2 지분을 소유하며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는 이 사건 2-나, 다, 라 토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고, 이 사건 2-마 토지도 K 소유 주택 및 토지들 인근의 임야로서 추후 오리농장 등으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2-가 토지와 함께 이 사건 2-나, 다, 라, 마 토지도 매수하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K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동생인 피고 C으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으로서도 이 사건 2-가, 나, 다, 라, 마 토지를 매수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2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은 주택의 진입로 역할을 하는 이 사건 2-가 토지는 평당 약 300,000원 가량으로 정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공시지가 정도로 책정하여 합계 70,000,000원으로 정하여진 것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2-가, 나, 다, 라 토지는 피고 A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2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을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가량 후인 2017. 12. 30.로 정하고 피고 C은 위 각 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5,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둔 사정도 정상 거래로서 수급할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2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2-가, 나, 다, 라, 마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압류, 가압류, 저당권 등이 전혀 설정된 바 없어 피고 A의 채무부담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서로의 채권·채무 상황이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2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 C에 대한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피고 B, C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혜진

별지